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시설의 입소정원은 112인으로 한다.

단, 입소자의 장기입원 등으로 외박자가 발생한 경우, 외박기간이 10일을 초과한 때부터 외박자를 대신하여 다른 입소자(특례입소자)를 입소시킬 수 있다. 다만, 외박자의 복귀로 인해 일시적으로 정원이 초과된 경우에는 특례입소자의 입소일로부터 90일이 되는 날 또는 입소계약 만료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는 정원을 초과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모집방법은 다음과 같다.

- ①지역기관 및 지역주민, 입소자 보호자의 추천
- ②기타 언론매체를 통하여 홍보
- ③전단지를 이용한 모집 홍보
- ④시설홈페이지 등을 이용한 모집 홍보
- ⑤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를 이용한 모집 홍보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시설에 입소하는 모든 입소자는 반드시 각 호의 명기된 내용에 따라 입소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1. 계약목적

- 1)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입소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입소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시설과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2)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입소자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 3) 시설과 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시설에 입소하는 기간 동안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 4)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수급자)에게 시설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계약대상자 - 계약은 입소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입소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할 경우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보호자)도 가능하다.

3. 계약기간 - 입소의뢰나 신청 시 입소기간(계약기간)을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토록 하며, 장기요양 1, 2, 3~5등급 입소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 상의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계약기간을 명기하도록 한다.
4. 계약기간의 만료 및 재계약 - 급여제공계약서 상에 명시한 입소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 장기요양갱신을 통하여 장기요양급여계약서를 재작성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다.
5. 입소보증금 - 노인복지법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 1~5등급 시설급여로 인정받은 입소자, 또는 등급 외 입소자에게 입소보증금을 수납하지 않는다.
6. 계약서 - 입소계약(급여제공계약)에는 계약당사자명,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며,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포함)등 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7. 계약서 부분 발부 - 입소계약서(급여제공계약서)는 반드시 부분을 발부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입소계약서 부분 발부 대장에 발부일 및 수령일, 수령자 이름과 연락처, 수령자 서명 등을 기재하도록 한다. 단, 급여제공계약서 부분에 대한 간인으로 발부 대장을 대신할 수 있다.
8.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입소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2)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입소자의 퇴소·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 3) 표준약관에 따른 입소자 면회 및 외박·외출에 관한 권리
 - 4) 입소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5) 입소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6) 입소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7)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시설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8) 입소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 9)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퇴소(전원) 시 연계기록지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9.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 2)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시설 통보 의무
- 5) 입소자가 병원 진료·입원 시 간호 및 간병·입퇴소 절차·입원비용 등에 관한 책임의무 및 필요물품 제공
- 6)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10. 수급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수급자는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2) 시설 내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 3)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 4)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 5) 기타 시설규칙 이행의 의무를 준수하도록 한다.

1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 1) 입소자의 건강관리 협조
- 2) 입소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 3)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 4)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 5) 기타 입소자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시설의 입소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세부내용은

1. 입소이용료 기준-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입소 비용 및 비급여 비용
(비급여의 상세 비용은 별도로 정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및 시설 내 게시판, 급여제공계약서를 통하여 명기한다.)
2. 기타비용-장기요양등급 외 입소자는 시설과 계약자 상호 합의에 의한 입소이용료로 산정한다.
3.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비급여항목	금액(원)	내역
식사재료비	1일 / 10,800	1식 / 3,600원 하루 3식
간식비	1일 / 1,500	일 1회
상급침실이용료	1일 /10,000	2인실 사용시
이미용비	이미용시 / 7,000원	-

[계약의 해지]

입소자가 입소규칙 및 시설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에는 계약 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시설의 계약해제

- 1) 시설은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 할 때 상황에 따라 상당한 예고 기간을 두고 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 ①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 ② 월 이용료 또는 기타 입소자가 시설에 납부할 비용 등을 2회 이상 체납 했을 때
 - ③ 월 이용료의 빈번한 납부지연으로 시설과의 신뢰관계를 심하게 해칠 때
 - ④ 입소자의 심신악화로 장기요양급여제공이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 ⑤ 타 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중대한 위협이 될 때
- 2) 입소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해 시설이 계약해지를 통지했을 때에는 곧 거실을 명도 하여야한다.

2. 입소자의 계약해제

- 1) 입소자나 보호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다.
- 2) 입소자는 계약을 해지하려고 할 때에는 계약 해지 통보를 제출하되 신청서상의 계약 해지일은 15일 이상의 예고기간을 두며 지정된 계약 해지일에 본 계약은 해지되는 것으로 한다.
- 3) 입소자는 전항의 계약 해지 일까지 시설에서 퇴거하며 입소자가 계약 해지 통보를 하지 않고 시설에서 퇴거했을 때는 시설은 퇴거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째를 계약해지일로 한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료 변경 시 안내절차 - 이용료의 변경은 시설운영 상황에 비추어 시설장이 결정 하도록 하며, 변경된 비용은 지체 없이 계약당사자나 보호자에게 여러 가지 방법(직 접 통보, 케어포 어플, 보호자 상담하기 등)을 통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도록 한다.

2. 급여비용 변경절차 -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는 급여계약을 재작성하여 수급자에게 1부 제공한다.

수가의 변경	보호자에게 유선 안내 후 이용료 적용
본인부담금의 변경	
등급의 변경 또는 장기요양인정기간의 만료	계약서 재작성
비급여 비용 변경	변경계약서 작성

3. 이용료 납부방법

- ① 청구되는 이용료는 선불이며, 다음 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정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말일에 고지하며 매월 5일 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한다.
- ② 이용료 납부는 기관의 수납지정(국민은행 465101-01-286584 실버스테이트요양원)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내용

급식서비스	입소 어르신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인 급식을 제공해 충분한 영양섭취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이에 따라 건강의 유지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상담서비스	입소어르신과 그 가정 구성원을 대상으로 생활환경 및 건강에 관련된 제반 문제들을 상담하고 문제해결을 위한 도움을 준다.
신체활동지원 서비스	입소 어르신에게 개인위생관리 및 목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청결상태를 체크하고 쾌적함을 유지한다.
의료서비스	입소 어르신에게 각종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건강상태 체크 및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재활 의욕을 고취시킨다.
기능회복훈련 서비스	기능회복훈련, 장애에 따른 부위별 치료를 통해 통증완화 및 재활의 기회를 제공하며 각종 치료 기법을 통한 개인의 잔존 능력향상을 통한 자립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인지활동 서비스	전문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통하여 결여된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사회성을 증진시키는데 목적이 있다.
여가활동서비스	다양한 여가활용을 권장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유도한다.

- 2) 비용의 부담은 입소자에게 노인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의료서비스, 신체재활서비스, 여가프로그램 서비스 등을 제공함에 있어 입소비용(본인부담금, 비급여) 이외의 추가비용을 청구하지 않으나, 시설 의료지원 서비스 이외에 입소자의 병적사항으로 발생하는 외부 의료기관 이용비용에 대해서는 전액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구체적인 처리 절차]

1.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 ① 간호(조무)사는 매일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 ②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계약의사가 입소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 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 ③ 간호(조무)사는 입소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 ④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계약의사와 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2)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 ① 입소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거나,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하여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 ②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정상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한다.
 -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종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 진료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건강상태 악화 및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 ① 건강상태 악화 및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 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 ②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시설종사자가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 ①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때에는 시설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단, 발생하는 진료비는 전액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 ②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하여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

른 차량이용료 등의 제반경비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5)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 ①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 ②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 ③ 원활하고 안전한 급여의 제공을 위해 옮겨가는 기관에 수급자의 급여제공과 관련한 필수정보를 기재한 연계기록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6) 감염자 또는 감염 위험자 발생시 처리 절차

- ① 감염병 발생이 의심되는 수급자가 발생하였을 때 즉시 보호자에게 안내 후 보건소 및 의료기관에 연계한다.
- ② 간호(조무)사는 해당수급자에 대하여 일시적으로 격리 조치 후 감염병의 감염유무를 관찰한다.
- ③ 감염병이 의심되는 수급자에 대하여 간호(조무)사는 보호자에게 연락 후 병원진료를 의뢰하고 시설장은 병원이송 전까지 해당 수급자를 격리조치 할 수 있도록 한다.
- ④ 감염병이 확진된 수급자에 대해서는 완치되고 전염력이 사라질 때까지 시설 내 입소를 중지한다.
- ⑤ 시설장은 감염병의 의심 증상을 보이는 종사자에 대해서 즉각 의료적 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결과에 대하여 모니터링을 한다.

7) 수급자 사망

- ① 수급자의 자연사망의 경우 특별침실로 격리하여 보호자와 장례절차를 상담한다.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 1. 입소자가 비품 또는 기물을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 훼손한 때는 이의 없이 이를 변상한다.
- 2. 시설물 사용에 있어 본인 부주의로 인하여 일어난 사고에 대하여 시설은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단,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한 사안은 영업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한다.
- 3. 시설 종사자는 시설물 관리 소홀과 위험물 방치로 일어날 수 있는 시설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
- 4. 가스 및 전기 안전점검은 년1회 법정업체에 의해 점검실시하고, 소방안전점검은 필요시 동안구소방서에서 검사 장비를 대여하여 자체점검을 년 1회 실시 후 결과자료를 제출 한다. 단, 소방관리위탁업체가 있을 경우 위탁업체를 통하여 실시하도록 한다.
- 5. 시설에서는 전기, 화재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전기매트 등 위험이 높은 물건은 반입을 제한한다. 또한, 입소자의 흥기 및 자해에 이용될 수 있는 가위, 바늘 등 뾰족한 용품은 소지 할 수 없으며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위험성이 높은 용품에 대해서는 직원 참석 하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6. 시설물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응급상황에 대비하여, 위험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 근처에는 가시성이 높은 위치에 응급벨 등을 위치시켜, 모든 근무자에게 응급상황을 바로 알릴 수 있도록 조치하며 제2차 응급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및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서비스 실시 중에 시설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이 입소자 또는 계약당사자에게 배상의 의무를 진다.
 -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입소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3)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 4) 시설장비 또는 시설관리가 부실하여 입소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 5) 노인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 학대 및 같은 법 제 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입소자의 건강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에 이르게 되었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입소자나 입소자의 보호자가 시설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 1) 시설에서 입소자가 자연 사망한 경우
 - 2)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 3) 입소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 4) 입소자가 보호자 동행 하에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1.등급별보험급여비용(보건복지부고시 금액)

(단위: 원)

	1일 수가	30일 수가	31일 수가	본인부담액(20%)		비 고
				30일	31일	
1등급	90,450	2,713,500	2,803,950	542,700	560,790	2025년 수가기준
2등급	83,910	2,517,300	2,601,210	503,460	520,240	
3,4,5등급	79,240	2,377,200	2,456,440	475,440	491,280	

2.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

(단위: 원)

비급여 대상 및 비용	항목	단가/일	30일	31일	비 고
	식사재료비	10,800	324,000	334,800	1식 3,600
	간식비	1,500	45,000	46,500	1식 1,500
	상급침실이용료	10,000	300,000	310,000	월 기준/2인실
	이미용비		7,000	7,000	이미용시발생
계	2인실사용시		676,000	698,300	
	일반		376,000	388,300	이미용미반영

3.노인요양시설 총 이용비용(1+2)

(단위: 원)

구 분	단 위		1등급	2등급	3,4,5등급	비 고
공단부담금	30일		2,170,800	2,013,840	1,901,760	
	31일		2,243,160	2,080,970	1,965,160	
개인부담금	30일		911,700	872,460	844,440	*다인실 기준 (4인실)
	31일		942,090	901,540	872,580	
	<경감대상자> 30일 기준	8%	586,080	570,380	559,170	
		12%	694,620	671,070	654,260	*이미용비 미반영
	<경감대상자> 31일 기준	8%	605,610	589,390	577,810	
		12%	717,770	693,440	676,070	

※ 등급외자 입소료 : 1일 90,000원(상급침실료 별도)
상급침실료 2인실 10,000원/일 추가 부과함.
별도 병위 진료비 및 약제비 발생 시 실비 수납 대행